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Reorgan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Wooden Documents Excavated in South Korea

저자 (Authors)	이재환 Lee, Jae-hwan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3 , 2019.12, 15-40(26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3 , 2019.12, 15-40(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9695
APA Style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문자, 23, 15-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이재환**

- I. 머리말
- II. 목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III. 목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IV. 목간을 어떻게 옮겨적을 것인가?
- V. 목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VI.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 목간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그 정리나 분류에 있어서 ‘표준화’나 ‘체계화’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 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의견 교환 및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우선 ‘목간’의 정의조차 충분히 합 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에 따라 한국 출토 목간의 수량 파악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는 제 작 의도나 형태에 기반하여 목간을 정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의도 파악이나 목서가 없는 목제품의 성격 추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文字가 書寫된 木製品’으로 정의하고 ‘捺印·印出을 위한 것은 제외한다’ 등의 단서를 부가할 것을 제안한다.

각 목간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번호는 그들의 이름에 해당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근본 적 의미는 식별과 검색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개의 목간에 부여 되거나, 하나의 목간에 여러 개의 이름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의 목간 정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목간에 여러 개의 이름을 붙여 버렸다는 점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 성은 발굴보고서의 일련번호를 따르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발굴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에 이미 해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당 유적 출토 목간에 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발표되므로, 발굴보고서 이전 단계의 일련번호가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발굴기관에서 목간을 최초 공개·보고할 때 부여한 번호를 원칙적으로 이후의 모든 연구서와 도록·보고서 등에서 가능한 한 바꾸지 않고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하겠다. 일련번호가 하나로 확정되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향후 검색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목간학회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목간들의 호칭들을 정리하고, 표준 표기 방식을 지정하는 표를 학회지에 만들어 실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한국목간학회의 관독문 범례 및 용어 표준화안 또한 확정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유형의 목간을 모을 분류 기준 또한 연구자 별로 각자의 기준을 제시해 둔 정도의 상태이다. 특히 통일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형태에 따른 분류 방법이다. 日本의 형식 분류를 참조하고, 한국 출토 목간의 특징을 고려한 외형 코드 및 상·하단 형태 코드를 만들어 보았다. 기준이나 방법을 제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논의의 진행이다. 한국에서 그러한 논의의 주체는 역시 한국목간학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와 ‘공인’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연구자들이 따를 만한 표준화의 결과물이 만들어져 나오기를 희망해 본다.

▶ 주제어: 목간, 정의, 일련번호, 범례, 표준화, 형식분류

I. 머리말

경주 안압지(現 신라 동궁과 월지) 발굴로 한국 목간의 존재가 알려지고,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통해 한국 목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이후로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비록 中國의 簡牘이나 日本의 木簡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미 몇 백 점을 넘을 만큼의 수량이 확보되었고, 발견 보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그 정리나 분류에 있어서 ‘표준화’나 ‘체계화’의 문제 제기도 종종 있었다. 한국 목간의 정리·분류안은 이미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몇 차례 제시된 바 있었다.¹⁾ 하지만 연구자별 案의 제시를 넘어서 본격적 의견 교환 및 결론 도출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년에는 한국목간학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나,²⁾ 역시 합의된 결과물을 제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

1)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p.8.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에 재수록).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 42(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에 재수록).

2) 2013년 1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에서 윤선태, 「목간의 형태와 용도 분류에 관한 기초적 제안」; 이경섭, 「신라·백제 목간의 비교 연구」; 박지현, 「백제 목간의 유형분류현황 검토」; 최상기, 「합

였다.

이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2017년에 간행한 『韓國의 古代木簡 II』는 목간의 정리와 용어·범례의 표준화에 있어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³⁾ 단, 해당 도록은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한국 목간 전반에 대한 정리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제시한 범례와 용어 정리 또한 아직은 한국의 목간 연구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이를 보완하여 한국 목간의 정리, 분류를 위한 한국목간학회 차원의 기준안이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를 위해 논쟁과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목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정리와 분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이 모두 몇 점인가?”라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는 목간의 수량이 계속 조금씩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점을 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목간의 수량 파악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떠한 유물을 목간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목간의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목간이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목간학회의 홈페이지(<http://mokkan.kr>)나 간행물들에서도 학회 차원의 목간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現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하여 오랫동안 한국 목간 연구의 기본 자료 역할을 하였던 『韓國의 古代木簡』의 「I. 목간의 개요」에서는 ‘목재를 다듬어 細長方形으로 만든 나무판에 먹글씨를 쓴 것’, ‘잘막하게 다듬은 나무판에 의사표시를 위해 글씨를 쓴 것’,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혹은 그것이 아직 널리 보급되기 이전 시기에 나무를 깎아서 그 위에 먹으로 문자를 쓴 것’, ‘나무판에 문자나 그림을 새기거나 묵서한 것’ 등 네 가지 정의를 나열하였다.⁴⁾ 여기서 “이처럼 목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대개 대동소이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각의 정의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는 세장방향 나무판 혹은 잘막하게 다듬은 나무판이라는 형태를 통해 우선적으로 목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면 목간이 아니게 된다.⁵⁾ 세 번째 정의는

안 성산산성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등의 발표가 있었다.

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학술총서 제69집)』.

4)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編,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p.10.

5) 목간의 英文 표기 또한 ‘wooden tablet’, ‘wooden strip’, ‘wooden document’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wooden tablet’과 ‘wooden strip’은 형태에 기반한 번역이고, ‘wooden document’는 목제품에 문자를 기록했다는 측면에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데, 대신 종이 발명 이전 혹은 종이 보급이 확산되기 이전이라는 시간 조건이 포함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정의에 따르면 ‘떡’으로 ‘문자’를 쓴 것이어야 하지만, 네 번째 정의에서는 문자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것, 떡으로 쓰지 않고 새긴 것 또한 목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정의를 택하느냐에 따라 목간으로 분류할 대상 자체가 상당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목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목간에 대한 연구가 앞서 진행된 주변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대나무가 주요한 서사 재료 중 하나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서사용으로 다듬어 떡으로 글씨를 쓴 竹簡과 나무를 재료로 만든 목간이 모두 존재했고, 이들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簡牘’이 통용되어 왔다.⁶⁾ 이는 기본적으로 書寫材料로서 竹과 木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동아시아의 나무 서사 재료를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목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였다.⁷⁾ 실제로 高麗時代 선박에서 발견된 대나무 재질의 서사재료들이 목재 서사재료와 아울러 ‘목간’으로 보고된 예도 있다.⁸⁾

廣義의 ‘목간’으로 죽간을 포괄하고자 하는 이러한 주장은 “대나무도 나무다.”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⁹⁾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대‘나무’라는 표현이 익숙하며, 영어권에서도 bamboo ‘tree’라고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나무는 식물학적으로 단자엽식물인 풀에 속하며, 벼·옥수수·강아지풀 등과 함께 벼과 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니다.

대나무가 가지는 서사재료로서의 특성이 목재와 구분되는 차별성은 참나무나 소나무 등 목재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비해 확연히 크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때문에 굳이 죽간을 목간의 하위항목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목제품 중 서사재료로서의 성격이 부여된 것이 목간이라면, 죽간은 죽제품 중 서사재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서로 병렬적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물론 죽간과 목간을 별도로 본다고 해서 죽간이 목간 연구자의 관심 대상 밖으로 멀어지게 되거나, 양자에 대한 연구가 상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簡牘’이라는 용어는 ‘竹簡’과 ‘木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竹·木의 두 서사재료를 포괄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簡·牘·觚 등 형태에 기반한 정의가 뒤따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른다면, ‘簡牘’으로 정의되는 특정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목적이나 용도를 위해 제작된 목제품

중점을 둔 번역으로 보인다. 한국목간학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로서 ‘wooden documents’를 채택하였지만, 학회지 『木簡과 文字』의 수록 논문들의 영문 제목에서는 여전히 ‘wooden document’, ‘wooden tablet’ 등이 혼용되고 있다.

- 6) 이승률, 2013,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1』, 예문서원, pp.118-119.
- 7) 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 및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8)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木簡과 文字』 第5號.
 임경희, 2010, 「마도2호선 발굴 목간의 판독과 분류」, 『木簡과 文字』 第6號.
 임경희, 2011,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木簡과 文字』 第8號.
 이들 대나무 재질의 ‘목간’에 대해서는 ‘죽간’이라고 부를 경우에 편철용 죽간의 형태를 연상케 할 수 있으므로 혼동을 막기 위해 ‘竹札’이라 명명하였다. 이 용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9) 윤선태, 2013 앞 논문, p.2.

에 문자가 서사된 경우에는 ‘簡牘’의 범주로 포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나무 소재를 제외 혹은 내포시킨 ‘木簡’이라는 용어로 簡·牘·觚 등의 형태를 아울러 지칭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書寫用’으로 다듬어 만들었다는 의도 혹은 목적을 정의에 포함시킬 경우, 만든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발생한다. 동일한 지점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의 목제품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들 중 일부에만 墨書가 있어도 나머지 역시 비슷한 용도나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해볼 만하지만, 다른 지점의 다른 층위에서 유사하게 생겼으나 墨痕이 없는 목제품이 출토된다면 이들이 동일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을 포함하는 정의는 궁극적으로 ‘추정’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대상이 목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모호함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日本에서는 木簡을 ‘墨書된 木片의 總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태나 용도, 내용 등은 목간을 정의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에는 ‘卒塔婆와 같은 것도 포함되어, 현재에도 日本 곳곳에서 날마다 만들어졌다 버려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¹⁰⁾ 다만, 발굴조사로 출토된 목간을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상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난다. 목흔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을 수 있겠지만, ‘의도’나 ‘목적’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목간의 정의를 도입하면, 목흔이 없는 것은 목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목흔이 없는 목간’이 보고되어 왔다. 한국 최초의 목간 발굴 사례인 경주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1점의 목간 가운데 4점은 ‘전혀 목흔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¹¹⁾ 함안 성산상성 1차 보고서에서도 19호는 “적외선 촬영에서도 글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간’이라고 보았고, 4호·5호 또한 일부만 남아 있고 목흔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목간으로 분류되었다.¹²⁾ 『韓國의 古代木簡』 역시 이들을 25호·26호·27호로 넘버링하여 수록하였다.¹³⁾ 이들은 결국 ‘주로’ 문자가 확인되는 목간을 중심으로 수록했다고 하는 『韓國木簡字典』에까지 실리게 되었다.¹⁴⁾

이에 대해서 일찍이 한국에서도 목서가 있는 경우만을 목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 바 있다.¹⁵⁾ 그러나 이후로도 지금까지 목흔이 없는 목제품들이 여전히 목간으로 보고되는 일들이 많다.¹⁶⁾ 나아

10) 奈良文化財研究所 木簡ひろば(<http://hiroba.nabunken.go.jp>) 참조.

1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p.288.

12)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咸安 城山山城』, p.97·p.100.

13)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의 古代木簡』.

14) 손환일 편저, 2011, 『韓國木簡字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pp.305-306 및 p.320.

15) 朱甫墩,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p.32 각주 2.

16) 2019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中國 北京에서 열린 首屆中日韓出土簡牘研究國際論壇暨第四屆簡帛學的理論與實踐學術研討會에서는 ‘목서가 없는 목간’을 포함하여 한국의 목간 수량을 1,597점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이주현, 2019, 「한국 목간의 발굴과 정리현황」, 『首屆中日韓出土簡牘研究國際論壇暨第四屆簡帛學的理論與實踐學術研討會 論文集』, pp.187-189). 이 집계에 따르면 목서가 확인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목간 수량은 450여 점이라고 한다(위 발표문, p.197).

가 이들 또한 '목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경섭은 목간을 '公私의 의지 혹은 정보 전달 등을 목적으로 나무조각[木片]에 文字를 기록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할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도 목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¹⁷⁾ 윤선태는 일찍이 목간을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목제품'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¹⁸⁾ 이후 '문자가 있는 목제품'으로 수정하고, "혹 문자가 없어도 형태상 목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목간에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가하였다.¹⁹⁾ 앞의 정의는 목적·의도에 기반한 것으로서, 문자가 기록되었는가 여부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았다. 뒤의 정의는 목적·의도를 조건에서 배제하고 문자 기록을 중심으로 놓았지만, 형태를 추가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목간의 기본적인 정의를 '문자가 있는 목제품'으로 두게 되면, 형태는 목간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어떠한 형태의 목제품이라도 문자가 서사되기만 하면 목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자가 없어도 형태상 목간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곧 '문자가 없어도 형태상 문자가 있는 목제품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애초에 목간의 기본적인 정의를 형태에 기반한 것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문자가 없는 것은 형태가 특정 목간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목간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개념 정의는 맞고 틀림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유용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선택할 대상이기 때문에, 둘 중 어떤 선택도 가능하나, 선택에 따라 목간으로 분류될 대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목간으로 분류해 온 형태적 특징이 곧 '문자 서사'와의 연관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목간의 형태인 장방형 판 모양 중에는 日本의 齋串처럼 문자 서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한국 목간의 특징적 형태로 언급되는 다면형 및 원주형의 목제품 역시 목흔이 없다면 서사재료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이다. 익산 왕궁리 화장실 유구에서 발견된 뒤처리용 나무막대 또한 형태적으로는 목간과 다를 바 없다.

목간은 하나의 문자자료로서 '문자 서사'라는 측면이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태와 문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역시 문자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동일한 형태의 목제품이라 할지라도 문자가 서사됨으로써 문자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문자자료인 목간으로서의 함의는 이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목간을 '목간이 아닌 목제품'과 구분되는 한 항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목제품 중 문자가 서사될 경우 '목간'이라고 하는 tag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면, directory에 기반한 분류가 아닌 'tagging'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해진다. '목간이 될 예정이었던 목제품'이나 '목간이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목제품'들은 분명히 목간 문화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반드시 이들을 목간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이경섭, 2013, 앞 책, p.3.

18) 윤선태, 2007, 앞 책, p.25.

19) 윤선태, 2013, 앞 글, p.3.

이같은 인식을 받아들여 『韓國의 古代木簡 II』는 ‘문자가 서사된 목제품’으로 목간을 정의하여,²⁰⁾ 기존에 목간으로 간주되던 일부 목흔이 없는 목제품을 제외하고 목간 수량도 새롭게 파악하였다. 형태상 하찰 목간과 동일하지만 목흔이 확인되지 않은 유물은 ‘목간형 목기’로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목간형 목기’와 같은 표현은 ‘목간’을 형태에 기반하여 정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목간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형태적으로 목간과의 유사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뒤에서 다룰 구체적인 형태 분류를 앞에 달아서 ‘어떤 형식 목간형 목기(목제품)’라고 표현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목간으로서의 사용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목간용 목제품(목기)’와 같은 표현 또한 가능하다.

사실 목제품에 문자가 서사된 경우를 목간으로 정의할 경우 굉장히 포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목제품까지 포함시켜 외연을 더 넓히기보다는, 일부를 배제할 추가적 기준을 부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해당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발굴조사로 출토된’ 등의 단서를 붙여야 구체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는 한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대 이후 시기까지 범위를 확장할 경우, 목간의 범주에 포함시킬지 고민해야 할 대표적인 자료로 ‘懸板’을 들 수 있겠다. 현판은 ‘목서가 있는 목제품’임은 물론, 서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 목적이나 용도에 기반한 정의에도 부합한다.

아울러 ‘墨書’라는 용어를 정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朱書나 刻書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경주 안압지에서는 刻書된 목간이 두 개 출토된 바 있다. 단, 이 경우는 刻書 위에 墨書가 더해졌다.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남근형 목간에는 刻書만 된 글자들도 존재한다. 다행히 이 자료에는 목서도 함께 있기 때문에 목간으로 분류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나, 앞으로 刻書만 있는 목간이 발견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목간을 ‘문자가 있는’ 혹은 ‘문자가 서사된’ 목제품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목서나 주서·각서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이 기준에 따르면 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酒罍 주사위 같은 것들도 목간으로 분류되어 그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고려시대 이후로 존재하는 엄청난 수량의 ‘木版’들이 기준에 부합하므로 목간의 수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목제 印章 역시 이러한 정의의 목간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모두 ‘목간’이라는 tag를 부여하여 목간의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捺印·印出을 위한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단서 조항을 부가하여 대상을 한정하는 편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자’를 정의의 기준으로 집어넣게 되면, 목흔은 분명한데 문자인지, 부호인지, 그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먹을 ‘문헌’ 것임이 확인되거나, 명확히 그림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사례라면 배제하더라도,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문자일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여 일단 목간으로 분류해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符籙만이 서사된 경우는, 일본에서 ‘呪符木簡’을 설정한 것처럼, 넓은 의미의 문자로 간주하여 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 책, p.10.

이상의 논의에 기반해서 목간의 정의에 대한 案을 제시해 보자면, ‘문자가 서사된 목제품’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竹簡이나 ‘목간이 될 예정이었던 목제품’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건물의 懸板이나 목제 주령 주사위 등은 포함된다. “捺印·印出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의 단서 조항을 덧붙여 木版이나 목제 印章 등은 배제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산된 한국 목간의 전체 수량 파악 자체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목간의 수량 파악에 있어 또 하나 신경써야 할 점은 목간의 斷片이나 削屑의 파악 문제이다. 斷片의 경우 다른 斷片과 접합이 확인되는 경우 합쳐서 하나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자적인 하나의 목간으로 카운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削屑 역시 日本의 사례를 참조할 때, 상호 접합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단독으로 한 개의 목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 부여 능산리사지 유적에서는 100편이 넘는 削屑이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를 일관되게 목간 수량 파악에 포함시키지는 않아 왔다. 목서가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경우는 목간으로 간주하기도 했으나, 목서가 있어도 목간으로 수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러 편에 하나의 일련번호를 붙이기도 했다.²¹⁾ 30점의 목간에 169점의 削屑을 더하면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의 수량은 총 199점이 되어, 기존에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 한국 출토 목간의 수량 규모 자체가 削屑의 파악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III. 목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목간의 개념 정의를 통해 정리할 대상이 파악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목간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번호가 그들의 이름에 해당한다. 일련번호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居延舊簡의 경우, 61.7=286.29 등과 같이 표기 방식이 확인되는데, ‘.’ 앞의 숫자는 목간을 채집했던 자루(袋)의 번호, ‘.’ 뒤의 숫자는 그 중 몇 번째 인가를 표시하며, ‘=’ 또는 ‘+’는 두 간이 접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居延新簡은 EPT51.535와 같은 넘버링을 사용한다. 여기서 ‘EP’는 甲渠候官의 破城子라는 유적을 가리키며, ‘T51’은 51번 그리드(grid)임을, ‘535’는 해당 그리드의 535번째 簡임을 보여준다.²²⁾

하지만 일련번호는 많은 정보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일련번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적내 출토 site나 층위, 공반 관계 등은 분명 특정 목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지만, 목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수 있다. 목간의 이

21) ‘껍질과 부스러기(削屑)’라는 항목으로 능산리사지 출토 삭설을 모아 실은 2008년의 『백제 목간』에서, ‘능16’이라는 이름으로 7편의 삭설을 함께 소개하였다. ‘능17’이라는 명칭은 125편의 삭설이 공유하고 있다. 단, 능17 삭설들에는 1에서 125까지의 세부 번호를 붙여 두었다(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 목간 -소장품조사자료집』, pp.46-55).

22) 大庭 修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p.17 凡例.

름이라고 할 수 있을 일련번호의 존재 의의는 식별과 검색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개의 목간에 부여되거나, 하나의 목간에 여러 개의 이름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하겠다.

한국 목간의 정리에 있어서 '목간의 일련번호 확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²³⁾ 하나의 목간에 하나의 일련번호를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특정 발굴지에서 출토된 목간들의 일련번호는 기본적으로 발굴 상황에 따라 발굴자가 지정하고, 이후 연구자들은 이를 따르면 된다. 그렇다면 발굴보고서에서 설정한 명칭 혹은 일련번호를 따르는 것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발굴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연구 논저들은 발굴보고서 이전 단계의 명칭이나 일련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목간에 대한 연구는 2004년 국립장원문화재연구소(現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그때까지 발견된 목간들의 원색 사진과 적외선 사진을 총망라하여 수록한 도록 『韓國의 古代木簡』을 발간하고, 2006년 그 개정판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 도록에서 제시된 일련번호를 목간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후 목간 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韓國의 古代木簡』은 함안 성산산성, 하남 이성산성, 김해 봉황동유적, 경주 월성해자, 경주 안압지, 국립경주박물관내 유적, 경주 황남동376번지 유적, 부여 관북리유적, 부여 능산리사지, 부여 궁남지, 부여 쌍북리유적, 익산 미륵사지, 기타 등 유적 별로 출토된 목간 사진들을 모아서 제시하였다. 이들 유적 중 일부는 이미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었고, 당시까지 발굴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유적도 있었는데, 일련번호는 함안 성산산성부터 시작해서 유적에 따라 reset되지 않고 1에서 319까지 차례로 부여되었다. 때문에 함안 성산산성을 제외한 유적 출토 목간들은 애초에 기발표된 발굴보고서의 일련번호와 맞지 않았으며, 이후에 발굴보고서가 발간되는 경우에도 그 일련번호를 가져다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1부터 번호가 시작되는 함안 성산산성의 경우조차 1998년에 나온 1차 발굴보고서에서 소개한 27개 목간의 일련번호와 일치시키지 않았다.²⁴⁾

이후 2011년에 그때까지 보고된 목간들을 정리한 『韓國木簡字典』이 발간되면서 또다시 조금 다른 일련번호 체계를 채택하면서, 한국 출토 목간들은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일련번호를 동시에 가지게 됨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검색'의 측면에 있어서 큰 번거로움을 야기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목간자료'에는 하나의 목간이 두 개의 다른 목간인 것처럼 각각 다른 호칭을 달고 소개되어 있어,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한다.²⁵⁾ 동시에 연구자나 사이트 운영자도 하나의 목간에 붙은 여러

23) 윤선태, 2013, 앞 글, p.1.

24) 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木簡과 文字』 第11號, p.82.

25) 예를 들어 함안성산산성 - 2006-15와 함안 성산산성 IV - 489, 함안성산산성 - 2006-28과 함안 성산산성 IV - 491 등은 같

개의 호칭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木簡學會의 학회지 『木簡研究』를 통해 매년 발굴된 목간들을 소개·정리하는데, 여기서 소개되는 목간은 유적별로 목간번호를 부여하여 상단에 ()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발굴기관에서의 일련번호가 있으면 최하단에 기재한다.²⁶⁾ 동일 유적에서 數次に 걸쳐 조사된 목간들을 일괄하여 소개할 경우에는 조사 차수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²⁷⁾ 중국에서도 간독 자료를 집성한 도록에서는 유적별로 기보고된 보고서나 도록의 일련번호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²⁸⁾

『韓國木簡字典』은 유적 별로 일련번호를 1부터 새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모든 목간들을 단일한 일련번호 체계로 일괄한 『韓國의 古代木簡』보다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발굴 차수나 연도에 따라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아서, 결국 발굴보고서와도 다른 또 하나의 일련번호를 만들어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목간을 최초 공개·보고할 때 발굴기관에서 부여한 번호를 원칙적으로 이후의 모든 연구서와 도록, 보고서 등에서 바꾸지 않고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발굴기관은 각각 나름의 기준에 맞추어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추후에 변경의 여지가 없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신경써야 하겠다. 그리고 일단 번호가 정해지면,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발굴보고서까지 해당 번호를 유지하도록 한다. 최초 공개 시점부터 번호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일련번호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 하기보다, 유적명에 몇 번째로 발굴된 목간인지 숫자를 붙이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 대상 유적의 범위가 넓거나 발굴 정황상 구역을 구분해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면 유적명과 번호 사이에 구역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동일 유적에서 여러 차례 발굴이 진행된다면 번호 앞에 차수 혹은 연도를 넣고 차수·연도마다 새로 번호를 붙여 나가도록 한다. 물론 일련번호가 겹치거나 변하지만 않는다면 꼭 이와 같은 형태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넘버링 자체는 발굴기관이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면 된다.

목간으로 간주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했다가, 발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목간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해당 번호는 비워두어야 한다. 목간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목간이 추후에 목간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차수 혹은 연도의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를 부여한다. 일부만 남은 목간 조각들은 다른 목간 조각과 동일한 목간의 일부임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 않는 한, 모두 각각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추후에 다른 조각들과의 畵綴 관계가 밝혀지면, 그중 가장 낮은 번호의 조각을 기준으로 ‘+’ 기호로 연결시키고, 원래의 일련번호 항목에는 어느 번호에 합해졌는지를 표시한다.²⁹⁾ 『韓國木簡字典』의 경우 일부 목간 조각들을 합쳐서 하나의 목간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각 조각들에게 부여되었던 일련번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韓國의 古代木簡』과도 번호가 달라지게 되었다. 빈 일련번호가 없는 깔끔함을 추구한

은 목간으로 판단된다.

26) 木簡学会 編, 1980, 『木簡研究』 第二号, p.4 凡例.

27) 木簡学会 編, 2011, 『木簡研究』 第三号, p.vii 凡例.

28) 中國簡牘集成編輯委員會 編, 2001, 『中國簡牘集成』 참조.

29) 이는 중국 간독 정리에서도 활용하는 방식이다(陳偉 主編, 2012, 『里耶秦簡校釋』, 文物出版社, p.9의 凡例 참조).

결과라 하겠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경우, 『韓國의 古代木簡 II』에서 17차에 걸친 발굴 성과를 총괄하여 출토 목간을 수록하면서 국가귀속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고, 기존에 다양하게 사용되던 일련번호와의 대비할 수 있는 색인까지 제시하여, 그간의 혼란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함안 성산산성 목간연구에 있어서 목간번호는 국가귀속번호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연구자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韓國의 古代木簡 II』에서 편의상 수록 순서에 따라 붙인 연번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빈 일련번호가 없는 깔끔한 모습과 체계성을 추구한 바로 보인다. 하지만 ‘깔끔함’보다 중요한 것은 ‘식별’과 ‘검색’에 있어서의 편의성이라는 기본 방향성이다. 해당 연번의 사용은 새로운 번호로 호칭을 또다시 늘리는 것이며, 기존의 일련번호와 겹치면서도 지칭하는 대상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권고에 따라 함안 성산산성의 목간에 대해서는 『韓國의 古代木簡 II』에 제시된 국가귀속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 『韓國의 古代木簡 II』의 국가귀속번호 채택은 이미 여러 개의 번호가 붙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일원적으로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향후 발견되는 목간들에 적용이 권장되는 방식은 아니다. 현재 다른 기관에서도 국가귀속번호로 목간 번호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국가귀속번호 역시 발굴이 마무리되고 유물을 정리·등록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전 단계의 현장설명·중간보고·簡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때 다른 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국가귀속번호를 공식적인 목간 번호로 바꾸게 된다면, 또다시 여러 개의 호칭을 하나의 목간에 붙이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하나의 목간에 하나의 호칭’이라는 원칙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로 2015년에 발간된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하)(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에서는 2014년 2월까지 출토 및 공개된 백제의 문자자료를 총정리하면서, 발굴보고서나 최초 보고 자료의 명칭에 기반하여 백제 목간의 호칭도 정리하였으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韓國의 古代木簡』이나 『韓國木簡字典』에 기반한 기존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일련번호가 확정된다고 해서 목간 호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실질적으로 호칭을 표기하는 방식이 연구자마다 혹은 상황 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냥 번호 숫자만 쓰는 경우, 목간+숫자 형식, 목간+공백+숫자, 숫자 다음에 ‘號’를 쓰는 경우와 ‘番’을 쓰는 등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韓國木簡字典』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를 살려 [陵]1과 같이 쓰는 경우와 []’를 생략하고 [陵]1로 쓰는 경우, 그냥 ‘1호’나 ‘1번’으로 표기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모두 같은 번호이지만 검색 과정에서는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물론 한국 목간의 경우 아직 출토 점수가 적고 연구 성과도 아주 많은 것은 아니어서, 유적명을 통한 검색 등으로 필요로 하는 결과물의 탐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목간 출토량의 증가와 신규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예상한다면 이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표준적인 호칭 표기의 典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식별과 검색에 있어서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한국목간학회라고 본다. 지금까지 출토된 목간에 붙은 호칭과

일련번호를 모두 정리한 대비표를 만들고, 표준적 표기를 제시하여 개별 연구자들이 적어도 논저의 제목이나 keyword에는 해당 호칭 표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 표는 매년 그 해 공개된 목간을 포함하여 업데이트해서 학회지 『木簡과 文字』 12월호에 수록하거나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겠다.

IV. 목간을 어떻게 옮겨적을 것인가?

목간과 목간이 아닌 것이 확정되고, 목간인 대상들에게 식별 번호까지 부여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간에 서사된 문자를 판독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목간 연구자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판독문 작성을 위한 원칙 혹은 범례가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같은 기관이나 학회에서 발행된 논저 안에서도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다. 거의 연구자 개인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판독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단적으로 판독되지 않는 글자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기호만 봐도 □, ■, ▨, △, ○ 등으로 다양하다. 연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독문 작성 범례의 확정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日本 木簡學會의 학회지인 『木簡研究』의 석문 부호 규정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日本木簡學會 『木簡研究』에서 규정한 釋文 부호들

부호	설명
·	목간 양면에 문자가 있는 경우, 앞·뒷면의 구분을 표시
┌ └	목간 상·하단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음을 표시. (端은 나뭇결 방향의 상·하 양단을 말함)
<	목간 상·하단에 홈이 있음을 표시
々 々	삭제된 문자가 있는 경우, 자획이 분명하면 원래 글자를 왼편에 부기함.
◦	천공이 있음을 표시. 단, 못 구멍 등 다른 용도의 천공은 생략함.
■ ■	삭제에 의해 판독이 곤란해진 것
□ □ □	결손 문자 중 글자 수를 알 수 있는 것
□	결손 문자 중 글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것
□ □	결손 문자 중 글자 수를 알 수 없는 것

부호	설명
×	앞뒤에 문자가 이어지고 있음이 내용상 추정되지만, 꺾여 파손되는 등에 의해 문자가 사라진 것.
ㄱ ㄴ	異筆, 追筆
丨	合点
…	나뭇결과 직교하는 방향의 刻線을 표시
〔 〕	교정에 관한 註로서, 본문에 치환되어야 할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석문 오른쪽에 붙임.
()	위의 경우 외의 교정註 및 설명註
〔 × 〕	문자 위에 겹쳐 서사되어 원래 글자를 정정한 경우, 정정한 곳 왼편에 •를 붙이고 원래 글자를 이와 같이 오른쪽에 표시.
カ	編者が 가한 註로서, 의문이 남아 있는 것
マ 、	문자에 의문은 없지만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것
∴ ∴	동일 목간으로 추정되지만, 부러지는 등에 의해 직접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문자가 불명한 것
	조판 관계로 한 行을 두 行 이상으로 나누어야 할 경우 행 마지막·행 머리에 붙임.

해당 범례는 세로쓰기가 기준이며, 釋文의 표기 방향은 나뭇결(木目) 방향을 세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曲物의 底板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釋文 하단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목간의 길이(문자 방향)·폭·두께(단위는 mm)를 표기하는데, 결손이 있는 부분의 수치는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한다. 원형 목제품의 경우는 지름과 두께를 적으며, 결손이 있는 경우 복원 지름을 표기하기도 한다. 목간의 치수 정보 아래에는 아라비아 숫자 세 자리로 된 형태 분류 코드를 기입하며, 조사기관이 부여한 목간의 일련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적는다.

중국의 간독 연구에서 사용하는 범례는 이보다 단순한 편이다. 『中國簡牘集成』의 부호에 대한 범례를 옮

표 2. 『中國簡牘集成』의 부호 범례

구분	형태		설명
(1) 簡文에 원래 있는 부호	●	원형흑점	원래의 간문 중에서 크기는 다양하지만, 1개 부분 혹은 1가지 일이나 조항, 1행의 시작 혹은 한 가지 일의 결속을 나타낸다.
	○	空心圓圈	
	■	墨筆扁長方形標記	
	□	扁長方框	
	√	句讀號 斷號	대부분 혼동하기 쉬운 구절에 기재됨.
	、	句讀號	
	—	句讀號	한 줄의 작은 가로선
	=	重文號	형태가 같은 두 개의 작은 가로획으로서, 해당 글자·단어가 한 번 중복됨을 표시함.
	/	斜線	이 부호 위쪽의 문건이 正文이며, 아래는 부속 부분임. 일반적으로 문서를 제작하거나 운반한 책임인 등을 나타냄.
		卍 □ △ ▲ ┌ └	문서를 읽을 때, 사용자가 가한 표지·교점·畫押 등으로서, 그 목적은 각각 다르므로 개별 분석 대상.
(2) 간독에 원래 있던 부호에 규범을 더한 것	■	간 상단을 검게 칠한 것으로, 크기는 다양, 형태도 방향·원형으로 다양.	기능은 '●'와 동일. 주로 榻籤에 사용.
	▣	간 상단에 그물 모양 격자를 그림. 방향 혹은 원형	
(3) 釋文에 새로 사용한 부호		, . . : !	표점부호
		□	원간의 문자 흔적이 모호하여 읽기 어려운 경우. 글자 1字당 □ 1개.
		∴	원간 문자의 흔적이 모호하고 글자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	원간이 끊어져 글자가 사라진 곳
		┌	원간이 세로로 쪼개져, 오른쪽이 결실.
		└	원간이 세로로 쪼개져 왼쪽이 결실
] [원간이 세로로 쪼개져 양쪽이 모두 결실
		 ①②③④⑤	원간문의 1행을 여러 행으로 나누어야 할 경우, 위의 것은 다음 행으로 이어짐을 표시, 아래는 숫자가 같은 것끼리 연결됨을 표시.
		▣	원간에 있는 봉니 압인.
		A, B, C, D	동일 간독의 정면, 배면, 측면 등 각 면.

겨보면 <표 2>와 같다. 이 가운데 (1)과 (2)는 原簡에 적혀 있는 부호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며, 판독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호에 대한 규정은 (3)이다.

이들 범례를 비교해 보면 ‘□’과 ‘||’의 용법 정도만이 中·日 간에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부호 ‘□’가 漢字 ‘口’字와 혼동될 것을 염려해서인지, ‘△’나 ‘○’, ‘■’, ‘▮’ 등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韓·中·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굳이 다른 부호를 새로 만들기보다 공유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중국 간독의 釋文에는 표점을 부가하는 데 반해, 일본 목간의 釋文은 원래의 簡文을 그대로 묘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목간의 경우도 문자 사이의 공백이나 문자의 배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간의 문자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본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수 차례 판독회의를 개최하면서 판독문 사용 기호를 통일하기 위한 논의를 거쳐 『韓國의 古代木簡 II』에 기호의 범례를 제시하였다(<표 3>).³⁰⁾

표 3. 『韓國의 古代木簡 II』의 ‘판독문에 사용되는 기호’ (세로쓰기 기준)

기호	내용
I, II, III, IV	목간에서 목서가 시작되는 면부터 순차적으로 표시.
∨	목간 상·하단에 홈이 있음을 표시
()	불확실하여 추독한 것
□	판독할 수 없는 글자
:	파손되어 몇 글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字	일부 남은 획을 통해 전체 글자를 추독하거나 앞뒤 문맥에 근거하여 추독한 것
◎	穿孔이 있음을 표시
⌈ ⌋	목흔은 존재하나 글자 수를 알 수 없는 것
	목간해서 원래 1행이었던 것을 두 행 이상으로 나누어야 할 경우, 마지막 행 머리에 붙여 이어짐을 표시
/	목서를 가로로 서술할 때 앞·뒷면을 구분하는 표시
×	단부가 파손된 경우를 표시
「 」	목간 상·하단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음을 표시 (端은 나뭇결 방향의 상·하단을 말함)
『 』	異筆, 追筆, 刻書

3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 책, p.16.

기호	내 용
:	먹선이 있음을 표시
√	앞뒤의 글자가 잘못되었을 경우, 자리바꿈으로 표시
々	앞뒤의 글자가 같은 글자는 생략하고 표시
여백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단, 이 범례도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와 ‘字’가 모두 ‘추독’으로 설명되고 있어 차이점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하겠다. 범례가 세로쓰기 기준임이 명시되었는데 ‘/’는 가로쓰기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로쓰기 기준이라면 상·하단부에 흠이 있음을 표시하는 기호는 日本처럼 ‘<’가 더 적합해 보인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로쓰기 기준의 범례를 별도로 만들어 함께 제시해야 하겠다. ‘√’는 轉倒符의 표시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목간에 기록된 부호를 옮기는 것이므로 앞의 기호들과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반복부호인 ‘々’ 또한 목간에서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판독문에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구분되어야 하겠다.

한편, 『韓國의 古代木簡 II』는 목간의 세부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의 혼란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통일안도 제시하였다.³¹⁾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기재면: 목서가 쓰여진 면을 말하며, 서사면이라고도 한다.
- 목간의 면수가 2면 이상일 경우: 목서가 시작되는 면을 일면으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이면, 삼면, 사면으로 한다.
- 단면목간·양면목간: 목서가 1면만 있으면 단면목간, 2면이면 양면목간, 3면이면 삼면목간, 4면이면 사면목간이라 말한다.
- 앞면·전면: 2면에 목서가 있는 경우 목서의 내용으로 판단하여 목서가 시작되는 면을 앞면 또는 전면이라고 한다.
- 뒷면·후면: 목서가 시작된 뒷면을 말하고, 앞면에는 목서가 있고 다른 면에는 목서가 없는 경우에도 뒷면, 후면이라고 한다.
- 단부: 세로로 긴 목간의 위, 아래 끝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나뭇결 방향의 상·하단 양단을 말한다.
- 측면: 목서가 기재되지 않고 목서를 기재할 목적이 없는 면으로 성산산성 목간의 경우 대부분 수피가 있는 부분으로 목서가 기재된 좌우 옆면을 말한다.
- 천공: 무엇인가를 매달거나 묶을 목적으로 목간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것을 뜻한다.

3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 책, p.15.

묶기힘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묶기힘: 목간의 상·하단에 묶을 수 있도록 판 'V'자형 홈을 일컫는 말로, 절입부, 홈형 등 연구자에 따라 각기 사용하고 있다.
- 묵흔: 먹물이 묻은 흔적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묵서를 기재하였으나 물리적·화학적 으로 묵서가 희미해져 글씨를 온전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묵흔이 있다고 말한다.
- 삭설: 목간 부스러기이며, 일본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만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다.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자별로 혼란스럽게 사용되던 용어의 통일을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과 설명 내용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부'의 정의를 '세로로 긴 목간의 위, 아래 끝부분'과 '나뭇결 방향의 상, 하단'으로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목간의 형태와 나뭇결 방향이 일치하지 경우 충돌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들 중에도 통일이 필요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한국목간학회의 용어와 기호 범례를 완성하여, 매 학회지 앞부분에 싣고,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과 한국목간학회 발간 저서에 해당 범례를 적용해야 하겠다.

V. 목간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목간의 문자에 대한 판독까지 정리되었다면, 이제 비슷한 유형의 목간들끼리 모아 보는 분류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중국의 간독 분류법으로는 편철간과 단독간을 크게 나눈 뒤, 단독간을 다시 檢(수신자 기입용, 봉함용 목간), 檄(꼬리표·운송표·뜻말), 檄(격서·격문), 觚(다면체 목간), 符(부절·부신), 調(명함), 傳(신분증·여권)의 7가지로 구분하는 방식,³²⁾ 書檄類, 律令類, 案錄類, 符卷類, 簿籍類, 檢檄類 등 6가지로 나누는 분류안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³³⁾ 이러한 분류는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용도나 형태가 동시에 기준이 된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각 분류 항목 내에서 다시 훨씬 복잡하게 소분류를 나누기도 한다.³⁴⁾

일본의 목간은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하찰목간, 문서목간, 기타목간으로 크게 3분되는데,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각 항목이 다시 세분된다. 『日本木簡集成』의 용도에 기반한 분류 방식을 소개하면 <표 4>와 같다.

32) 이승률, 2013, 앞 책, pp.136-153.

33) 李均明, 2005, 『古代簡牘』, 文物出版社, pp.170-198.

34) 李均明, 2008, 『秦漢簡牘文書分類集解』, 文物出版社.

표 4. 『日本木簡集成』의 용도 기준 목간 분류

荷札木簡		
文書木簡	양식별 목간	詔·勅旨, 奏, 啓, 解, 移, 符, 国符, 郡符, 牒, 宣, 召文, 進上狀, 反抄, 請, 기타 문서
	기록 관계 목간	기록(1日分), 기록(일정기간), 기록(날짜 기재 없음), 기록(일기), 伝票, 宿直, 문의 경비·식료 지급, 出學
	내용·용도별 목간	考課, 錢, 告知札, 人名札, 画指, 禁制·制上, 文書軸, 文書函, 封緘, 神祇·佛敎, 經典出納記錄, 物忌札·蘇民将来札, 呪符
기타목간	和歌·漢詩, 鳴·左·右·上·下, 坪付·サイコロ·장기의 駒, 付札, 習書	

이들을 참조하여 한국 목간의 용도 분류안도 이미 몇 차례 제시된 바 있다(표 5). 단, 목간의 용도나 목적을 추정하여 분류할 경우, 轉用과 재활용, 폐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의 용도로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거나, 특수한 용도 항목의 추가도 가능할 것이다.

표 5. 용도별 목간 분류안 대비표

윤선태(2007)		이경섭(2013)			윤선태(2013)	
1. 전적목간		문서목간	문서		편철용 목간	
2. 문서목간	2-1. 수발문서목간		기록			帳簿
	2-2. 장부목간					集計
	2-3. 기록간				傳票 [지급 /청구]	
3. 휴대용목간	3-1. 부신용목간				기타	문서용 단독목간
	3-2. 과소용목간					
4. 꼬리표목간	4-1. 표지용 꼬리표목간	꼬리표 [附札] 목간	짐꼬리표[荷札]		부찰용 목간 (하찰, 표지용 등)	
	4-2. 세금공진용 꼬리표목간		물품꼬리표 [物品附札]			
	4-3. 창고정리용 꼬리표목간	기타 목간	주술·의례 목간		주술용 목간	

윤선태(2007)		이경섭(2013)		윤선태(2013)
	4-4. 일반물품용 꼬리표목간		학습용 목간[글자연습(習書) /典籍암송(논어 목간) 등]	습서용 목간 (학습 및 글자 연습용)
5. 기타용도목간	5-1. 습서용목간			기타 목간 (서간 및 제첩축 등)
	5-2. 주술·의례용 목간		문서표지 목간[題籤軸]	
	5-3. 권축용목간		기타(書簡 등)	

목간의 정리 과정에서 우선시될 분류는 물건 자체에 드러나는 특성, 즉 소재나 형태에 기반한 것이 된다. 日本에서는 목간의 형태를 세세하게 구분하여 형식 번호를 붙이고, 판독문 마지막에 표기한다. 日本 木簡學會의 형식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011: 短冊型.
- 015: 短冊型으로, 측면에 구멍을 뚫은 것.
- 019: 한쪽 끝이 方頭이고 다른 끝은 절손·부식으로 원형을 잃어버린 것.
- 021: 小形矩形.
- 022: 小形矩形 목재의 한 끝을 圭頭로 한 것.
- 031: 장방형 목재의 양쪽 끝 좌우에 홈을 넣은 것. 方頭·圭頭 등 다양한 제작 방식 있음.
- 032: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에 홈을 넣은 것.
- 033: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에 홈을 넣었지만, 다른쪽 끝은 절손·부식되어 원형을 잃은 것.
- 041: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 좌우를 깎아서 笏子板 손잡이 형태로 만든 것.
- 043: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笏子板 손잡이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 좌우에 홈을 넣은 것.
- 049: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笏子板 손잡이 형태로 만들었으나, 다른 한쪽 끝은 절손·부식되어 원형을 잃은 것.
- 051: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한 것.
- 059: 장방형 목재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했지만 다른 쪽 끝은 절손·부식되어 원형을 잃어버린 것.

- 061: 용도가 명료한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안에 제품명을 주기함.
- 065: 용도 미상인 목제품에 목서가 있는 것.
- 081: 절손·부식 등의 원인으로 원형을 판명할 수 없는 것.
- 091: 삭설.

이 형식 분류법은 01/02/03/04/05/06/08/09의 두 자릿수 숫자로 크게 나눈 뒤, 세 번째 숫자를 통해서 이를 더 세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래에는 한국 목간에 대해서도 번호를 붙이는 형식 분류안도 제기되었다.³⁵⁾

- I: 긴 막대 형태의 세장형목간
 - I a: 길이나 장폭비를 고려한 하위 형식
- II: 목간에 홈을 판 부찰목간
 - II a: 홈의 위치 상단, II b(하단), II c(상하단) 등의 하위형식
- III: 목간에 구멍을 뚫은 부찰목간
 - III a: 구멍의 위치 상단, III b(하단), III c(중단) 등의 하위형식
- IV: 사면목간 등의 다면목간
 - IV 3: 단면 3각형의 다면목간, IV 0(원주형목간), IV 4(사면), IV 5(오면) 등의 하위형식
- V: 세장형목간의 하단이 첨형인 목간
- VI: 목간부스리기

그런데 ‘부찰목간’은 목간의 용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서 형태 구분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사실 I의 ‘세장형목간’이나 II·III·V은 단부의 홈이나 구멍, 첨형으로 다듬은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세로로 긴 장방형 판 형태의 목재로 동일하다. 기본적인 목재의 형태, 상·하 단부 처리 방식은 다른 층위로서 구분하는 편이 더 분류를 쉽게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목재의 전체 형태를 기준으로 코드번호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 1; 종장방향 목판 (종/횡은 나뭇결 방향 기준)
 - 11; 너비가 좁고 길이가 긴 일반적인 형태
 - 12; 너비가 매우 좁고 길이는 긴 세장방향
 - 13; 너비와 길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

35) 이는 동일한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연구자별 의견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윤선태, 2013, 앞 발표문, p.5).

- 2; 횡장방향 목판
 - 22; 가로로 긴 장방향
 - 23; 정방향에 가까운 형태
- 4; 기둥형 막대
 - 40; 원주형
 - 43; 3면
 - 44; 4면
- 6; 기타 (제침촉, 납근형, 인형, 목기, 목조 구조물 등 문자가 서사된 모든 목제품 포괄)
- 8; 미상 (파괴·손상이 심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9; 삭설

6·8·9는 각각 日本 木簡學會 형식분류의 06·08·09에 대응시킨 것이다. 단, 1·2·4는 목재의 외형만으로 구분하였다. 흔히 ‘단책형’ 혹은 ‘세장방향’으로 부르는 형태가 1형식, 구체적으로는 11형식에 해당하며, 다면 목간은 4형식으로서 43·44·45 등으로 면수를 부가할 수도 있다.

기존에 목재의 외형과 함께 논해지던 상·하단부의 형태는 어떤 외형과도 결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형식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알파벳 대/소문자의 구분을 통해 상단부와 하단부를 표시하는 방식 일찍이 신안선에서 발견된 목간에 대한 형식 분류에서 제안된 바 있으므로,³⁶⁾ 이를 활용하고자 한다. 알파벳 대문자는 상단, 소문자는 하단임을 가리키며, 중간에 가까울 경우에는 ‘l’을 부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와 혼동될 수 있는 I/i와 O/o는 제외하고, 각 알파벳에 단부의 형태적 특징을 부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A/a; 직선
- B/b; 삼각형(圭形)
- C/c; 다각형
- D/d; 반원형
- E/e; 한쪽 방향 뾰족해짐 ※ 중단에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뾰족해지기 시작한 경우’
- F/f; 양방향 뾰족해짐 ※ 중단에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뾰족해지기 시작한 경우’
- G/g; 원뿔 형태
- H/h; 구멍 ※ 중단에 가까울 경우’
- J/j; 단부 좌·우측면에 홈 ※ 중단에 가까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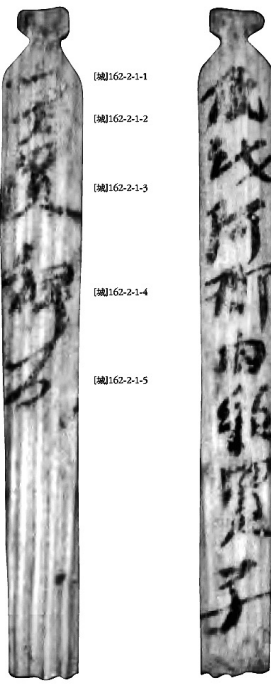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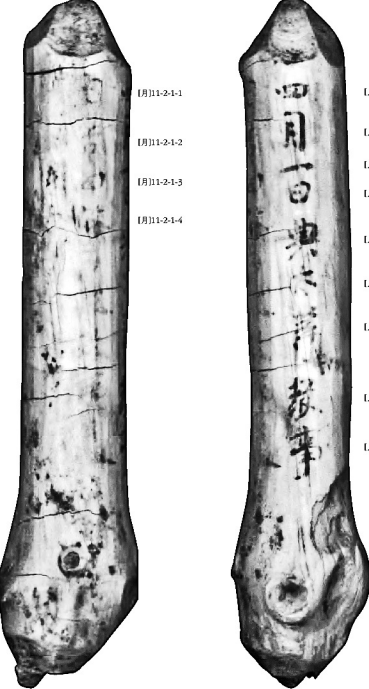
3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8, 『新安海底遺物(綜合編)』, p.254.

K/k: 둘레에 돌아가면서 흠을 판 경우

M/m: 끝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두껍고 둥글게 마무리

X/x: 파손

한편 다면목간의 경우, 만들어진 모든 면에 문자가 서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면수 외에 서사면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사면 수를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정해 두면 구별이 가능해진다. I·II·III 등 단독으로 서사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의 목재 외형 코드와 나란히 표기하면 형태를 좀더 명확히 나타내준다. 세장방향 판 혹은 단책형에 양면묵서된 목간이라면 11II, 사각기둥형 막대 목간에 3면의 문자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44III이 된다. 알파벳의 단부 형태 코드 또한 개별적으로 특정 형태를 지칭하는 동시에 단일 목간의 여러 형태 요소를 표시하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이같은 코드를 지정해 두면 특정 형태가 조합된 목간을 쉽게 추출하여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상·하단이 모두 삼각형이면서 상단에 구멍이 있는 목간들만 모아 보고 싶다면, 'BHb'로 추출하면 된다. 실제 목간에 이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p>외형 : 11 단부 : Bbj 서사면수 : II</p>	<p>외형 : 11 단부 : AJa 서사면수 : II</p>	<p>외형 : 40 단부 : Gm 서사면수 : II</p>

VI. 맺음말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들을 정리하고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이 이루어진 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제안된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조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준이나 방법을 제안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논의의 진행일 것이다. 한국 출토 목간의 정의와 표준 호칭 및 범례의 마련 등에 있어 표준화를 수행할 만한 주체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목간학회라 생각된다. 한국목간학회 차원에서 ‘합의’와 ‘공인’의 절차를 거쳐, 많은 연구자들이 따를 만한 표준화의 결과물이 만들어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9. 10. 26.

심사개시일: 2019. 10. 30.

심사완료일: 2019. 11. 25.

- 권인한·김경호·윤선태 編, 2015,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하)(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1)』, 주류성.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V』.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학술총서 제69집)』.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咸安 城山山城』.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咸安 城山山城II』.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의 古代木簡』.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咸安 城山山城III』.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編,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8, 『新安海底遺物(綜合編)』
- 박지현, 2013, 「백제 목간의 유형분류현황 검토」,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손환일 편저, 2011, 『韓國木簡字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 윤선태, 2007,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이경섭, 2013, 「신라·백제 목간의 비교 연구」,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이경섭, 2013,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新羅文化』 42.
- 이경섭, 2013,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 이승률, 2013,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1』, 예문서원
- 이용현, 2006,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 임경희·최연식, 2010, 「태안 마도 수중 출토 목간 판독과 내용」, 『木簡과 文字』 第5號.
- 임경희, 2010, 「마도2호선 발굴 목간의 판독과 분류」, 『木簡과 文字』 第6號.
- 임경희, 2011, 「마도3호선 목간의 현황과 판독」, 『木簡과 文字』 第8號.
- 朱甫曠, 2008, 「한국 목간 연구의 현황과 전망」, 『木簡과 文字』 創刊號.
- 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 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木簡과 文字』 第11號.
- 李均明, 2005, 『古代簡牘』, 文物出版社.
- 李均明, 2008, 『秦漢簡牘文書分類集解』, 文物出版社.

中國簡牘集成編輯委員會 編, 2001, 『中國簡牘集成』.

陳偉 主編, 2012, 『里耶秦簡校釋』, 文物出版社.

大庭 修 編著, 1998, 『木簡【古代からのメッセージ】』, 大修館書店.

木簡学会 編, 1980, 『木簡研究』 第二号.

木簡学会 編, 2011, 『木簡研究』 第三三号.

〈Abstract〉

Reorgan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Wooden Documents Excavated in South Korea

Lee, Jae-hwan

Since studies on wooden documents excavated in South Korea have been advanced, issues regarding ‘standardization’ and ‘systematization’ were raised in terms of organizing and categorizing wooden documents. However, they were still individual proposals, so it was not possible to draw conclusions by exchanging opinions constructively.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wooden document’ is not fully agreed on yet. Even the quantity of wooden documents in South Korea can vary widel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In the past, wooden document was often defined based on the purpose or form of it. But figuring out the creator’s intent or guessing its purpose without text can be arbitrary. Therefore, I propose to define wooden document as “wooden item on which text has written” and to add a provisory clause such as “except one made for printing and stamping”.

The number that identifies each wooden document is the name of it. Making easy to identify and search, that is why numbering fundamentally. Therefore, we should not give the same name to different wooden documents, and should not give several names to one wooden document. So far, it has been very confusing to identify wooden documents in Korea, for one wooden document has more than three names. The most basic direction is to follow the number in the excavation report, but it is not possible practically because a lot of research are carried out on excavated wooden documents before the publication of the excavation report. As a general rule, it should be recommended to use the number assigned at the initial disclosure in all subsequent studies, catalogs, reports, etc. Nevertheless, the manner to display the assigned numbers may also vary. It can lead to confusion in search in the futur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must list all the numbers and titles used for wooden documents so far, and specify the standard notation in the journal each year. The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should also be established by the society.

And categorization criteria are not uniformed yet, so they vary from researcher to researcher. I proposed a code system by appearance for wooden documents in this paper. More important than proposing a criterion or method is the further discussion and conclusion. In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could be the center for those discussions. Through the process of ‘consensus’ and ‘accreditation’, standardized results would be produced soon, I hope.

▶ Key words: wooden documents(木簡), definition, numbering, legend, standardization, categorization